

## 전문가 활용 및 초청 강사료 지급 지침

### \*자격기준

직급 구분	자격 기준			
	소속기관이 직급(기준 1)	교육/연구경력(기준 2)	교육/연구경력(기준 3)	전문가 경력(기준 4)
A급	교수, 책임급연구원	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	석사학위 취득 후 16년 이상	16년 이상
B급	부교수, 책임급연구원	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	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	10년 이상
C급	조교수, 선임급연구원	박사학위 취득 후 즉시	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	5년 이상

\* 기준 1에 해당사항 없으면 기준 2,3,4 순차적으로 비교 하여 지급

\* 참여연구원에겐 자문료 지급 불가

### \*자문료 및 강사료 지급 기준

#### 국내전문가

(단위: 원)

구분	자문료 (일)	비고
A급	350,000원 이하	제세포함
B급	300,000원 이하	
C급	250,000원 이하	

#### 국외 전문가

(단위: US\$)

구분	자문료 (일)	비고
A급	300 이하	제세포함
B급	250 이하	
C급	200 이하	

### \* 초청강사료

(단위: 천원)

구분	금액	전결사항
강사료	500이하	소속 부서장
	500초과 -2,000이하 주1)	대학원장, GIST대학장, GIST연구원장
	2,000초과	부총장, 대외부총장

\* 주1) 행정부서 초청강사료는 부총장 또는 대외부총장이 전결토록 함.